

2025년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공고

- 사업목적 : FTA특혜관세활용 관세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농식품 직·간접 수출 업체
- 지원품목 : 신선 농축산물, 가공식품 * 단, 수산물 및 수산식품 제외
* 수출품목 : 수출통계 AG·HS코드로 분류되는 농림축산식품
- 지원규모 : 130 개소 * 지원 규모 초과 시 조기 신청 마감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5. 11. 30일 까지 (약8개월)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 마감일 : '25. 10. 31(목)까지)
- 선정방법 : 직·간접 수출실적 증빙 및 지원 제외 요건 확인 후 선착순 선정
* 우선지원 : 해외진출서비스, 원스톱 시험수출 선정업체 신청시 우선 연계 지원
- 지원내용

- ① **(FTA수출활용 1:1 맞춤지원)**^{필수} 공사가 지정한 전문 관세사가 1:1 밀착지원
 - 지원 신청시 기본+ 자율선택(1~4) (최대 7M/D, 128개사)
 - 자율선택 5번선택시 컨설팅 관세법인 필요성 검토 후 선정 (최대15M/D, 2개사)

구분	컨설팅 내용	투입일수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진단 컨설팅 - 기업별 수출현황 파악, HS품목 분류, 관세 실익분석, 원산지 관련 서류 관리, 자율선택 항목 컨설팅 사전진단 등 	3일 (M/D)
자율 선택	①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 지원	2~3일
	② FTA원산지 확인서 발급 지원	1~2일
	③ FTA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 지원	2~3일
	④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3~4일
	⑤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총2 개사 지원) * '24년 농식품 수출실적 1.5백만불 이상 대상	10~20일

* 최대 지원가능 품목은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기준 5개로 한정

- ② **(수출안전망 보험지원)**^{선택}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대비 2만달러 이내 1년 보장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수출 초보기업 대상 무료 지원
 - * 보험가입 희망 동의업체 한해 무역보험공사에 일괄 가입, 중복 가입시 지원 제외
 - * 최종 가입업체 대상 보험증서는 이메일로 별도 발송

□ 성과측정 : 컨설팅 후 지원효과 분석, 우수사례발굴, 만족도 조사 협조

□ 중도 포기 패널티

○ 컨설팅 착수 이후 중도 포기 업체는 차년도 FTA 컨설팅 참여 불가

□ 신청방법 : 지원기업이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회원가입 필요) → 사업신청 → 2025년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
공고 선택 → 사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제출서류와 같이 제출

구분	제출서류 목록	부수
필수	· 신청서 (별첨 양식)	1부
	· 회사상품 소개서 (카탈로그 등)	1부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Trass) 제출 (참고1)	온라인
	· aT 'One Pass(원패스)'을 통해 증명서류 한번에 간편제출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입증명, 지방세 납입증명]	온라인
	· 수출증빙 (간접수출시) : KNET 발급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1부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선정 이후에도 신청 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소속집단 (상호출자 제한기업 및 공시대상 기업)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를 받은 기업
- 사업등록증명과 표준산업분류상 신선 농축산물 또는 농식품 재배생산, 제조유통, 식품제조, 무역와 관련 없는 업종, 사행성 업종
- 타 유관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수출바우처 등)에 선정되어 중복정산 수혜를 받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현장코칭과 FTA특혜관세활용지원 중복 지원 불가
- 수행 용역사, 컨설팅사, 전문위원과 지원기업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 추진일정



2025년 4월 18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참고 1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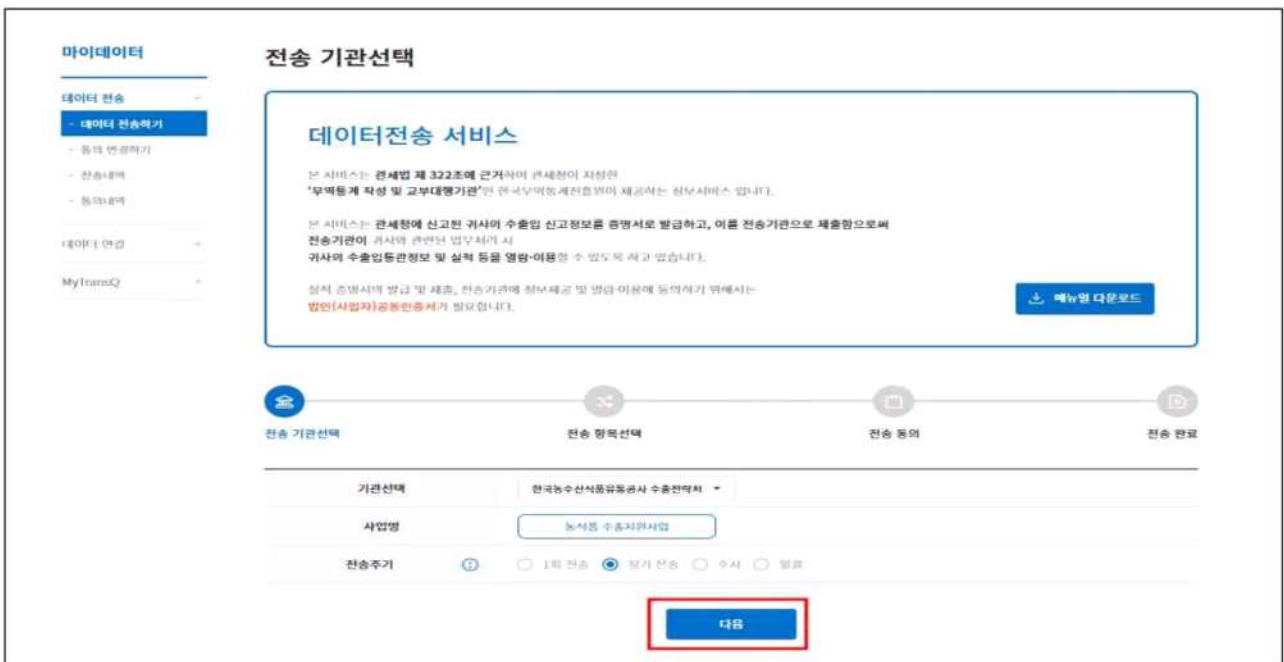
□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방법 *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1. TmyDATA 플랫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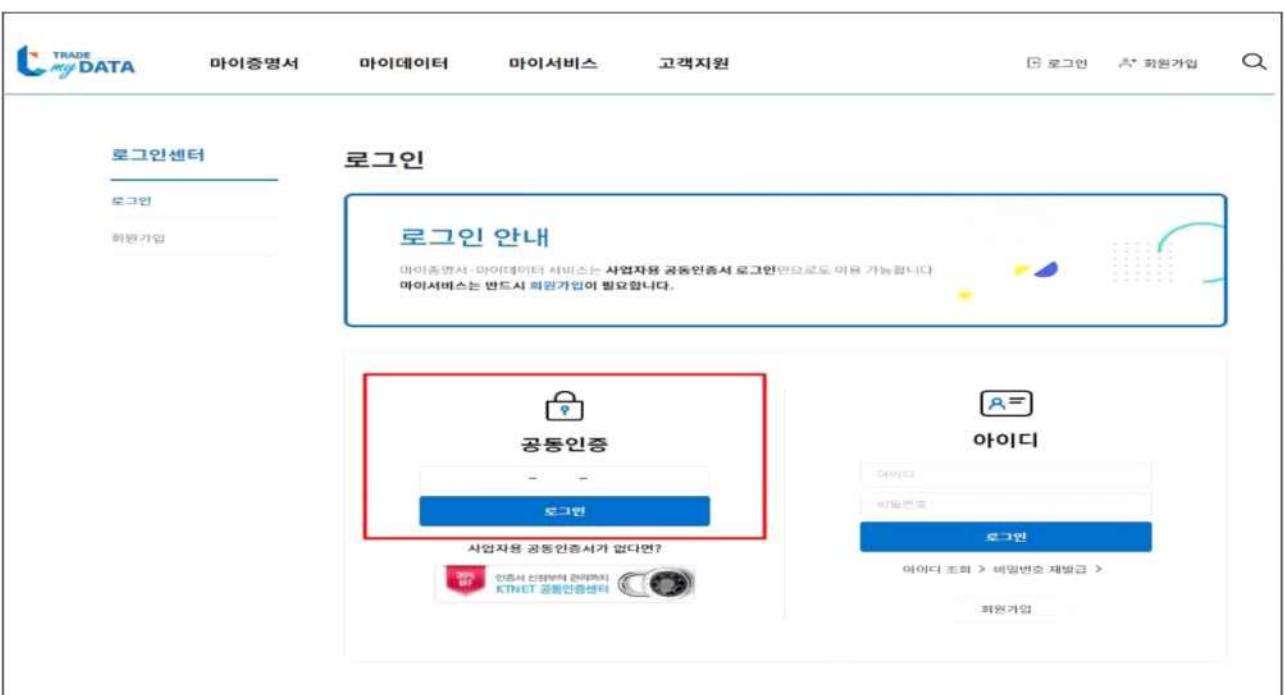
※ 일반접속: <https://tmydata.or.kr> ▶ 마이데이터 ▶ 데이터 전송하기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처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선택

※ 전용 URL: <https://tmydata.or.kr/mydata/send/index?t=1601&c=721&general=true>



2.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인증 ※회원가입 불필요



3. 필수 전송항목 체크

마이데이터

데이터 전송

- 데이터 전송하기
- 동의 변경하기
- 전송내역
- 동의내역

데이터 연결

MyTransQ

전송 항목선택

전송 기관선택
전송 항목선택
전송 동의
전송 완료

동의 내용

② 전세형 통계계산 제외물품은 송부시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목적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연계 동의일로부터 5년
자료조회 기간	2012-01-01 ~ 2030-01-31	전송일자	매월 <input type="radio"/> 1일 <input checked=""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15일 <input type="radio"/> 1일,15일 <input type="radio"/> 수시
전송기간	2025-02-20 ~ 2030-01-31	수출입구분	<input type="radio"/> 전세 <input checked="" type="radio"/> 수출 <input type="radio"/> 수입
데이터기준	<input type="radio"/> 연월간 집계 <input checked="" type="radio"/> 신고연별	데이터기준	<input type="radio"/> 연월간 집계 <input checked="" type="radio"/> 신고연별
조회기간 기준	<input type="radio"/> 수개월 <input type="radio"/> 신고일 <input checked="" type="radio"/> 요일별	사업자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수출자 <input type="radio"/> 제조자 <input type="radio"/> 수출자6세제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동의항목	기본동의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수개월차, 선택일자, 수출대행자상호, 수출대행자 사업자번호, 제조자상호, 제조자사업자등록번호, 목적 국가코드, 운송수단유형코드, 적재함구공함코드, 원산지증명서발급현황, AG코드명, HS10단위부호, 운송량, 신고이와가계, 신고 명확가계	
<input type="checkbox"/> 선택 동의항목	선택동의		

다음

4. 열람·이용 동의 및 전송요청

마이데이터

데이터 전송

- 데이터 전송하기
- 동의 변경하기
- 전송내역
- 동의내역

데이터 연결

MyTransQ

전송 동의

전송 기관선택
전송 항목선택
전송 동의
전송 완료

전송 동의서

전송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처	동의목적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목적
동의일자	2025-02-27	전송주기	정기 전송
전송일자	매월, 5일	전송기간	2025-02-20 ~ 2030-01-31
자료조회 기간	2012-01-01 ~ 2030-01-31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필수 동의항목	기본동의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수개월차, 선택일자, 수출대행자상호, 수출대행자 사업자번호, 제조자상호, 제조자사업자등록번호, 목적 국가코드, 운송수단유형코드, 적재함구공함코드, 원산지증명서발급현황, AG코드명, HS10단위부호, 운송량, 신고이와가계, 신고 명확가계	

[필수] 전송 및 열람-이용 동의 안내 **내용보기**

- 수출입 신고정보는 본 동의서 제출을 통해 귀사가 열람-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 신고정보를 열람-이용하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정보주체가 전송기관으로의 정보 전송 및 열람-이용 동의 권한을 지정한 시점까지입니다.
- 귀사가 전송기관으로 정보제공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단, 1회 전송 및 전송한 내역이 경우 동의철회가 불가하며, 전송기관이 플랫폼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정기전송 동의내역은 차관 철회됩니다.)
- 귀사는 본 정보 및 열람-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일부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합니다.

당사는 본 내용에 대한 본인 권리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위 자료의 전송 요청 및 전송기관이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송하기

5.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인증서 선택

자정매체를 선택하세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항목	구분	사용자	발급자	만료일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와 대소문자용 구분자 사용)

1. 수출입신고정보는 본 통의서 제출을 통해 귀사가 '열람-이용'을 동의한 전송기관에 한해 제공되며, 사후 언제든지 그 열람-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입 신고정보를 열람-이용하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정보주체가 전송기관의 정보 열람-이용 동의 경관을 지정한 시점 또는 품의를 철회하는 시점까지입니다. (단, 1회 전송의 경우 동의 철회 불가)
 3. 귀서는 본 정보 열람-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업무편의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내용에 대한 본인 관리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위 자료의 전송요청 및 전송기관이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전송완료

데이터 전송 완료

내역확인

① 내역 확인은 "전송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내역의 경우 전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 간편제출(One pass) 방법 *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 온라인 통한 행정기관 증명 발급·제출 자동화  [바로가기 링크 클릭](#)



참고 2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수출자의 종류

구분	① 업체별 인증수출자	②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 세관	

□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 (단, 협정에 따라 혜택 상이)

구분	① 업체별 인증수출자	②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 능력 보유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최근 2년간 서류보관 의무 위반 無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품목(HS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혜택범위	전체 협정, 전체 품목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품목(HS6단위)
인증혜택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 서류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모든 협정에 적용)	품목별 인증을 통해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 서류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인증 협정에만 적용)

□ 인증수출자 협정별 혜택

협정	인증 이전	인증 이후
한-EU 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천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천유로 초과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첨부서류 제출(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확인서, 그밖의 증빙자료)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서) 수출자의 서명 필요(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서) 수출자의 서명 생략(전자문서 이용 가능)
RCEP 한-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화 1천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증명 방식 활용 가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시 첨부서류제출 생략
기타	동제도 미적용	